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588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94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조혜란	이정희	이윤영	김종순	02/27 이비오
협조				

2015년 성동구 지방재정(예산) 공시



성 동 구

(기획예산과)

2015년 성동구 지방재정(예산) 공시

성동구 재정공시 제1호(2015. 2.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인)

I 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II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총괄

● 예산 규모

- 세 입 예 산
- 세 출 예 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 여 건

- 재 정 자 립 도
- 재 정 자 주 도
- 통 합 재 정 수 지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주민참여 예산현황

2015년 성동구 지방재정(예산) 공시

- ◆ 우리 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916억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3,814억 원)보다 102억 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82억 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74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66억 원으로 총 3,422억 원입니다.
- ◆ 우리 구 '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4.5%이며(동종 자치단체 평균 25.7%),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55.2%(동종 자치단체 평균 44.2%)입니다.
- ◆ 우리 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9억 원 적자이나, 그 이유는 2014년 옥수 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 소송의 패소로 인해 159억 원이 지급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열악한 상황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 확보와 예산 절감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 자: 기획예산과 조혜란(02-2286-51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성동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3,916	3,893	23	3,814	3,494	320
	세 출 예 산	3,916	3,893	23	3,814	3,494	320
	중기 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 자립도	34.54	32.2	2.34	25.79	27.21	-1.42
	재정 자주도	55.24	52.23	3.01	42.53	44.23	-1.70
	통합재정수지	-109	-106	-3	4	6	-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별·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성동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1,628	342,276	-	21,946	27,406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1,506	325,006	356,107	389,330	391,62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4,006	100	266,236	100	285,780	100	328,094	100	342,276	100
지방세	58,876	22.30	61,709	23.18	64,918	22.72	64,001	19.51	68,704	20.07
세외수입	75,702	28.67	72,485	27.23	74,227	25.97	41,629	12.69	49,513	14.47
지방교부세	4,858	1.84	4,698	1.76	3,044	1.07	3,758	1.15	4,142	1.2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2,259	23.58	61,521	23.11	61,777	21.62	61,965	18.89	66,729	19.50
보조금	62,370	23.62	65,822	24.72	81,815	28.63	114,619	34.93	136,539	39.89
지방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42,122	12.84	16,649	4.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항목은 '14년 신설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성동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1,628	342,276	-	21,946	27,406

-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 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1,506	325,006	356,107	389,330	391,628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4,066	100	266,236	100	285,780	100	328,094	100	342,276	100
일반공공행정		23,194	8.78	23,409	8.79	23,126	8.09	31,759	9.68	21,554	6.30
공공질서 및 안전		1,313	0.50	1,340	0.50	1,750	0.61	1,769	0.54	1,621	0.47
교육		9,374	3.55	8,823	3.31	7,744	2.71	6,578	2.00	8,048	2.35
문화 및 관광		13,939	5.28	16,348	6.14	15,360	5.37	15,573	4.75	15,368	4.49
환경 보호		11,505	4.36	11,230	4.22	11,646	4.08	13,420	4.09	13,674	4.00
사회 복지		88,181	33.39	86,225	32.39	100,164	35.05	134,838	41.10	154,679	45.19
보건		6,018	2.28	6,778	2.55	8,620	3.02	9,045	2.76	9,235	2.70
농림해양수산		200	0.08	372	0.14	412	0.14	340	0.10	531	0.16
산업·중소기업		544	0.21	708	0.27	2,632	0.92	3,232	0.99	3,982	1.16
수송 및 교통		6,655	2.52	4,623	1.74	7,122	2.49	3,954	1.21	5,674	1.66
국토 및 지역 개발		9,667	3.66	7,951	2.99	6,699	2.34	6,834	2.08	5,616	1.6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989	2.27	5,083	1.91	3,705	1.30	4,664	1.42	2,048	0.60
기타		87,486	33.13	93,345	35.06	96,799	33.87	96,008	29.29	100,246	29.2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동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390,132	377,957	394,085	409,362	424,921	1,996,457	2.20
자 체 수 입	118,854	119,640	121,534	123,576	125,624	609,228	1.40
의 존 수 입	226,126	231,108	234,993	239,379	242,451	1,174,057	1.8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153	27,209	37,558	46,407	56,845	213,172	5.90
② 세 출	390,132	377,957	394,085	409,362	424,921	1,996,457	2.20
경 상 지 출	141,915	142,668	146,377	152,479	159,167	742,606	2.90
사 업 수 요	248,217	235,289	247,708	256,883	265,754	1,253,851	1.7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성동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4.54%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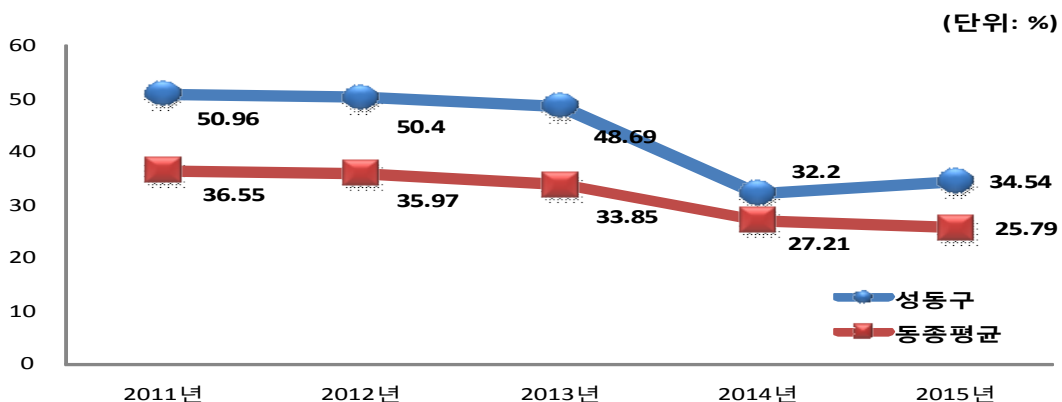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34.54%	342,276	118,217	207,410	0	16,649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0.96	50.40	48.69	32.20	34.54
최종예산	51.54	43.74	41.69	29.8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34.54%)는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25.79%)보다 8.75% 높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성동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24%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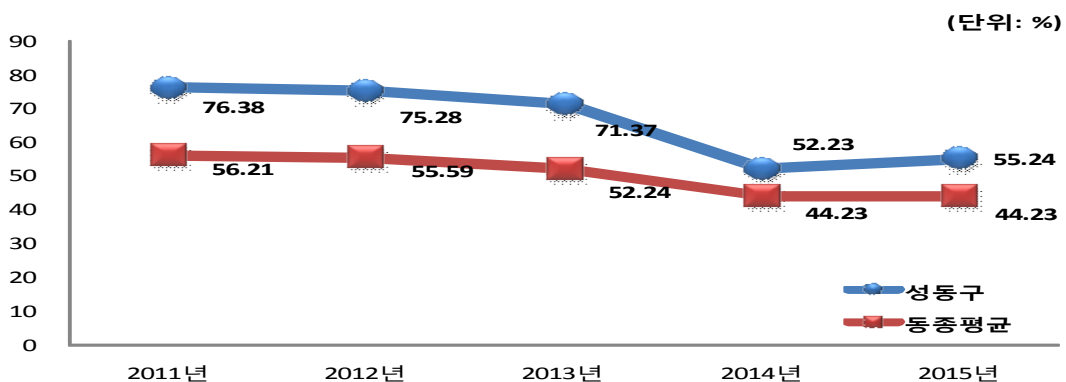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24	342,276	189,089	136,539	0	16,649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76.38	75.28	71.37	52.23	55.24
최종예산	75.94	67.39	63.73	50.7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55.24%)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44.23%)보다 11.01%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성동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1,022	373,474	6,375	7,430	1,055	22,610	374,529	-33,507	-10,897
일반회계	325,628	341,106	0	0	0	12,500	341,106	-15,478	-2,978
기 타 특별회계	11,821	17,793	0	0	0	10,110	17,793	-5,973	4,137
공 기 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3,573	14,575	6,375	7,430	1,055	0	15,630	-12,057	-12,05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7,984	-51,454	-61,199	-48,918	-33,507
통합재정수지 2	-5,281	-9,484	-19,085	-10,574	-10,897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주요 이유는 2014년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 159억원이 지급되어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성동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7	23,812
여성정책추진사업	26	10,07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7,72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6,01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재정운영공개를 클릭해 보세요.

☞ 성동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재정운영공개\(2015년 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성동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26	960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960	
문화체육과	왕십리문화공원 내 소공연장 설치	25	
토목과	무학봉 골목길 계단 핸드레일 설치	50	
공원녹지과	미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3	
토목과	무학봉12길 4 골목 일대 정비	50	
토목과	마장초·중교 통학로 조성	50	
지역경제과	마장축산물시장 도로 청소기 도입	20	
토목과	마장동 382번지 일대 골목길 정비	50	
문화체육과	성동구립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19	
토목과	행당로11길 고개 정비사업	33	
공원녹지과	행당두산아파트 뒤 이면도로 하수관거 개량공사	40	
토목과	독서당로59길 33 주변 계단 정비	25	
토목과	독서당로 57길 도로 정비	50	
공원녹지과	응봉역~응봉산 입구 표지판 설치	8	
질병예방과	금호동 보건분소 내 재활센터 설치	22	
공원녹지과	금호1가동 작은공원 조성 사업	50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우리동네 아카데미 운영	50	
공원녹지과	성수1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0	
자치행정과	성수1가2동 방범용 CCTV 설치	20	
토목과	성동교~뚝섬역 실개천 정비사업	30	
주택과	정안경로당화장실 정비사업	43	
지역경제과	뚝도시장 내 CCTV 설치	35	
공원녹지과	성수연립 외 8개소 노후연립 수목정비	30	
보육가족과	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 설치	35	
자치행정과	성수2가3동 방범용 CCTV 설치	20	
안전치수과	송정 제방길 보행로 정비	50	
자치행정과	송정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20	
노인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강사 파견 사업	19	
안전치수과	용답역 나들목 정비사업	20	
안전치수과	용답동 로데오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	
지역경제과	용답상가시장 개방형 화장실 설치	13	